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-58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8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- 가. 상위 법령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74조 및 제75조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
- 나.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구체적 사항을 신설하여 재난 발생시에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74조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구체적 사항 신설
  - 1) 재난의 긴급구조 확충사업
  - 2) 재난예보·경보시설의 설치·보수·보강
  - 3)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의 보수·보강
  - 4) 수해·강풍으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
  - 5)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및 장비의 임차
  - 6) 재해원인분석, 침수흔적조사,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
- 나.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용(동법령 제75조) : 당초 30% → 15%로 하향 조정
  - 1) 매년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

## 3. 개정근거

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74조 및 제75조

4. 개정조례안 : 따로붙임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1. 7. 21. ~ 2011. 8. 10.(제출된 의견 없음)

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(2011. 8. 18)

다.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

라. 신구조문 대비표 1부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”를 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”를 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”를 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”으로 하고, “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”을 “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”으로 한다.

제6조 본문 중 “영 제74조제1항 및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」 제20조”를 “영 제74조”로 하고, “용도외에는”를 “용도 외에는”으로 하며,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재난의 긴급구조 확충사업
6. 재난예보·경보시설의 설치·보수·보강
7.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의 보수·보강
8. 수해·강풍으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
9.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및 장비의 임차
10. 재해원인분석, 침수흔적조사,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

제7조제1항 중 “영 제74조제1항제6호”를 “영 제74조제1호마목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5항 중 “치수방재과”를 “생활안전과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 본법」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서울특별시 마포 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·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....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」..... ..... .....</p>
<p>제2조(기금의 조성)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 리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 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7조에 따른 적립금</p> <p>2. ~ 3. (생략)</p>	<p>제2조(기금의 조성) ..... ..... .....</p> <p>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..... .....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누계잔액(매 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)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 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" 영"이라 한다)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 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(이하 "적립금" 이라 한다)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 품 예금에 예치 · 관리하여야 하고,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(이하 "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"이라 한다)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 능하도록 별도로 운용·관리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..... ..... ....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..... ..... 법정적 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..... ..... .....</p>
<p>제6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, 영 제74조제1항 및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 본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 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</p>	<p>제6조(기금의 용도) ..... 영 제74조..... ..... 용도 외에는 .....</p>

현행	개정안
<p>1.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</p> <p>2.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</p> <p>3.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</p> <p>4. 재난관련 장비 구입</p> <p>(신설)</p> <p>(신설)</p> <p>(신설)</p> <p>(신설)</p> <p>(신설)</p> <p>(신설)</p>	<p>1. ....</p> <p>2. ....</p> <p>3. ....</p> <p>4. ....</p> <p>5. <u>재난의 긴급구조 확충사업</u></p> <p>6. <u>재난예보경보시설의 설치·보수·보강</u></p> <p>7. <u>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의 보수·보강</u></p> <p>8. <u>수해·강풍으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</u></p> <p>9. <u>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및 장비의 임차</u></p> <p>10. <u>재해원인분석, 침수흔적조사,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진단</u></p>
<p>제10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<u>치수방재과</u> 기금관련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.</p> <p>⑥ (생략)</p>	<p>제10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.....</p> <p>..... <u>생활안전과</u> .....</p> <p>.....</p> <p>⑥ (생략)</p>